

이천호 형사소송법 7판

Educational Producer For Your Success

편저자 : 이천호

※ 정오 및 오타자를 수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ge 위치	전	후
30 하단 표내용 수정 '친고죄의 분류'	나.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 피해자간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친고죄를 말한다. 절대적 친고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있다.	나.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 피해자간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친고죄를 말한다. 상대적 친고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있다.
77 하단 표내용 수정 '영장 제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79 (2)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권 리와 재체포 여부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체포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즉 체포 장소, 피의사건명, 체포 일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체포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0조의5, 제87조 제1·2항) 미란다 고지 사항도 통지해야 하나 변명할 기회는 줄 필요가 없다. 변명할 기회는 피의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15순경1차, 16법9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접견교통권(제200조의6, 제89조, 제91조)과 체포적부심사청구권(제214조의2 제1항) 이 인정된다. 또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제30조 제1항, 변호인선임권)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인선임의뢰권) 변호인선임의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6, 제90조) ☞ 15순경1차, 16법9
86 소제목 수정	3) 비례성의 원칙과 범인·범죄의 명백성	(3) 압수·수색·검증
89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	앞에서 서술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와 완전히 똑같다. 즉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접견교통권 (제200조의6, 제89조, 제91조)과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제214조의2 제1항)이 인정된다. 또한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제30조 제1항, 변호인선임권)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인선임의뢰권) 변호인선임의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6, 제90조)	앞에서 서술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와 완전히 똑같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접견교통권 (제200조의6, 제89조, 제91조)과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제214조의2 제1항)이 인정된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제30조 제1항, 변호인선임권)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인선임의뢰권) 변호인선임의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가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0조의6, 제90조)
98 표제목 수정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피의자보석(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 보석의 비교	➡ 피의자구속과 피고인구속의 비교
101 가운데 표 내용수정	통지의무 (끝문장) 변명할 기회는 피의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지의무 (끝문장) 변명할 기회는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08 표내용 수정 '주체와 상대방'	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 또는 구속된(인신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이다. 그 범위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같다. 그러므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에 의하여	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 또는 구속된(인신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이다. 그 범위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같다. 그러므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천호 형사소송법 7판

Educational Producer For Your Success

Page 위치	전	후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물론 감정유치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에 포함된다.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물론 감정유치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도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주체에 포함된다.
122 표 가운데 '보석조건의 결정' 내용삭제	① 보석조건의 결정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98조)	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98조)
237 상단 내용 수정	② 예외;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소(항소·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64조의2, 392조) ☞ 08국9, 09국7, 14법9, 17순경1차, 17국7, 18순경1차 공평의 원칙상 상소한 공동피고인을 위해서도 원심판결을 하기 하는 것이다. cf.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소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② 예외;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소(항소·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64조의2, 392조) ☞ 08국9, 09국7, 14법9, 17순경1차, 17국7, 18순경1차 공평의 원칙상 상소한 공동피고인을 위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 하는 것이다. cf.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소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262 상단 표내용 수정	제33조 제3항(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위의 a ~ f의 사유(* 미칠 농구 심사)가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된다.) 관련	제33조 제3항(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
272 표내용 수정 '서면 또는 구두주의'	8) 공소취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공소장변경; 그 취지를 기재한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98조 제1항) 단, 법원은 검사는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제298조 제5항)	8) 공소취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공소장변경;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98조 제1항) 단, 법원은 검사는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제298조 제5항)
320 하단 표내용 수정 '검사·변호인 등의 출석'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즉 검사와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 12순경3차, 17교정·보호·철경9 또한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한다.(동조 제2항)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즉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 12순경3차, 17교정·보호·철경9 또한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한다.(동조 제2항)

이천호 형사소송법 7판

Educational Producer For Your Success

Page 위치	전	후
369 표 전체 교체 '(1) 공판절차의 갱신의 의의와 구별개념'	의의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법9, 10국9 구별 개념 정지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공판절차에 한정된다. 공소장 변경·심신상실·기피신청·질병·위헌법률심사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법9, 10국7	의의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공판절차의 갱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없던 것(無)으로 하고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공판절차는 혐의의 공판절차인 '공판기일의 절차'를 말한다. 상소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원심법원이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심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판절차의 갱신이 아니다. 구별 개념 공판절차의 갱신은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없었던 것(無)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공판절차의 정지는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고, 정지 이후의 나머지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409 관련판례 내용 수정 '1' 마지막 문단	(독수의 과실이론) 단, 1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일지라도 예외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독수의 과실이론이 제한이론) 이 판례는 독수의 과실이론과 독수의 과실이론이 제한이론을 채택한 판례이다.	(독수의 과실이론) 단, 1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일지라도 예외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독수의 과실이론의 제한이론) 이 판례는 독수의 과실이론과 독수의 과실이론의 제한이론을 채택한 판례이다.
416 중간부분 제목수정	3. 전문증거의 근거	3. 전문법칙의 근거